

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

□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

연도	연평균 보험료 분위						
	저소득			고소득			
	1분위	2~3분위	4~5분위	6~7분위	8분위	9분위	10분위
2024년	87만 원	108만 원	167만 원	313만 원	428만 원	514만 원	808만 원
*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	138만 원	174만 원	235만 원	388만 원	557만 원	669만 원	1,050만 원

□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: 808만원

- ※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(808만원)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,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(808만원)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.

□ 적용기간 : 2024.1.1.~2024.12.31.(진료일 기준)
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